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울진휴포 오션더캐슬 | 입주자 모집공고

OCEAN THE CASTLE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유의사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울진휴포 오션더캐슬 분양임대주택(APT-0054-787-02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청약하시기 앞서 정확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모든 궁금사항이 있으시거나 청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고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www.hug.or.kr) 에서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점검 및 청약가능세대 확인 등을 통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사항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과열 상태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청약홈(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없으므로 청고자료로 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가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2.16.일자. (청약자격조건 및 일정 등) 이후,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변더(공급일정)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북도 울진군)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제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종일한 모든 주택인간 사전연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되는 당첨자 선정 주택에도 당첨자 무효처리(입주자 지위 무효)되오 1회에 한하여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인근지역지역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4조에 따른 제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자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에는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경상북도 울진군)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단, 계약금을 납부하고 1차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해당 청약자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양 주택건설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16.) 현재 울진군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원인 미성년자자라면, 청약저축(분양전환전제)가 가주하는 재약통장(재약전제),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상북도 울진군 거주자가 우선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제3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체류자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오나, 해당지역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학교 등 단기 체류하는 국내거주자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우선공급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우선공급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해당기간 종료일에 체결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해당기간 종료일에 체결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격을 순위요건을 만족하면으로,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공휴 공휴일 주말 및 대체휴일 경우 「분양전 거래시기 제한」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격을 순위요건을 만족하면으로,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공휴 공휴일 주말 및 대체휴일 경우 「분양전 거래시기 제한」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세대주 및 세대원 자격에 대한 청약자격 요건이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울진군을 제외한 경상북도 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지역에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울진군 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진군 지역에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8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9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0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4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5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6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7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8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9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0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4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5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6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7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8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9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30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3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3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3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34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35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36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37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38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39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40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4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4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4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44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45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46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47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48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49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50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5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5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5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54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55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56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57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58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59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60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6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6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6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64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65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66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67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68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69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70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7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7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7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74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75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76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77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78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79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80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8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8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8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84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85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86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87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88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89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90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9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9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9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94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95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96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97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98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99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00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0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0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0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04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05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06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07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08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09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10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1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1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13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은 계약자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